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81
----------	-------

발의연월일 : 2026. 3. 16.

발 의 자 : 김위상 · 박정훈 · 김성원
박충권 · 김은혜 · 우재준
신성범 · 구자근 · 김승수
이인선 · 김선교 · 김미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 근로시간 산정 특례로 ‘월급제’를 두고 있음.

월급제는 기존 ‘사납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해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이 더 열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월급제 도입 이후 지자체, 택시업계 등에서 실시한 여러 설문조사를 종합하면, 운수종사자의 10~20% 만이 월급제에 찬성하고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이에 현행 월급제 원칙은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노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법률 제 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가 합의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택시운수종사자 소정 근로시간 산정 특례) 일반택시 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 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 도록 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 설>	제11조의2(택시운수종사자 소정 근로시간 산정 특례) ----- ----- ----- ----- ----- ----- ----- 다만, 일 반택시운송사업자와 「근로기 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 로자대표가 합의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